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10년 7월 6일

3. 제안이유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함

1)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에 관한 사항(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은 제외)을 추가함(안 제5조 제25호)

2) 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제26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기능개편(안)을 근거로,

- 안 제5조제25호의 교육감 소관인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 중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을 제외하고 교육장에게 시설사업의 권한을 위임하고,

- 같은 조 제26호의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는 등
- 본청·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와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던 감사 기능을 도교육청으로 통합하게 되면, 일상감사 인력충원 방안과 각급학교에 대한 정기 감사 또는 사안감사 등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